

[사회보호법 폐지 활동백서]

제4권 - 법령 및 법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앤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시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외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민간단체)

[사회보호법 폐지 활동백서]

제4권 - 법령 및 법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앰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민간단체)

4권 목차

■ 사회보호법 시행 당시 법령

- 사회보호법
- 사회보호법 시행령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 2001.7.30.)
- 치료감호소당직근무지침
- 감호근무준칙(1987.10.26. 내규 제6호)
-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1998.12.30. 내규 제130호)
-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1987.10.20. 법무부훈령 제200호)
- 의료직공무원의보직관리기준(1986.9.1. 법무부훈령 제171호)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1987.10.20. 법무부훈령 196호)
-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1987.11.19. 내규 제16호)
-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관리규칙(1982.4.10. 법무부령제241호)
-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 규정(1988.2.10. 내규 제24호)
-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1987.11.19. 내규 제16호)
- 보호감호소 업무처리지침(예규교 제250호 81.11.25.)
-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 처리지침(예규보 제277호 83.6.21. 예규보 제284호 84.3.27.)
- 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칙(예규 제251호 81.12.5. 개정. 83.2.14. 예규 제272호)
- 감호자 근로성적등급사정규칙(예규작업 제248호 81.11.25.)
- 감호자 근로보상금 계산규칙(예규작업 제249호 81.11.25.)

■ 사회보호법 폐지 관련 법안과 검토의견

- 1) 16대 국회
 - 범죄행위를한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003.7.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2003.8.28.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2004.2.
 -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2003.8.28.
 -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2004.2.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2003.12.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

훈, 2004.2.

치료보호법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2003.12.5.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003.12.6.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

훈, 2004.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003.12.6.

청원소개의견서, 정범구, 2004.2.3.

2) 17대국회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발의), 2004.9.1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2004.9.15.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노희찬의원 대표발의), 2004.9.18.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법무부, 2004.10.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제안설명서, 노희찬, 2004.12.24.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2004.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법령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 법무부, 2005.9.

사회보호법 시행 당시 법령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일부개정】

사회민주화 및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군사법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군사법권의 독립 및 군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민주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두던 고등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을 관할관으로 함.

②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구성을 개선하여 군판사의 비율을 높임.

③군검찰부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검찰수사관제도를 신설함.

④구속영장의 발부권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하고, 검찰관이 구속영장청구시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함.

⑤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형집행면제권을 폐지하며, 항소심에서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함.

⑥약식절차제도를 신설함.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89.3.25 법률 제4089호]

[일부개정]

감호의 요건에 관한 규정중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필 요적 보호감호제도 및 필요적 치료감호제도를 모두 폐지함과 아울러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강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재량을 주고,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이른바 인신매매사범·가정파괴사범등만으로 한정하여 강호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①보호처분대상자중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를 삭제함.
- ②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을 삭제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명시함.
- ③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대폭축소하여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등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등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로 한정함.
- ④보호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되,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⑤치료감호의 종료시기를 현행 완치된 때에서 강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변경함.
- ⑥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를 공개하도록 함.
- ⑦사회보호심의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보호처분의 집행개시후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는 주기를 매 2년에서 매 1년으로 단축함.
- ⑧사회보호위원회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⑨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강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사회보호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⑩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시효를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
- ⑪이 법 시행당시 7년이 경과한 보호감호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전문개정]

헌법개정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인 군법회의의 명칭을 군사법원으로 바꾸는 한편,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상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①법률의 제명을 군법회의법에서 군사법원법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관인 법무사를 군판사로 그 명칭을 변경함.
- ②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고지받을 사항과 그 가족등이 통지받을 사항을 정함.
- ③피고인 및 피의자 구속시에 보장되는 변호인선임의뢰권등을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함.
- ④구속적부심사청구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⑤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서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⑥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⑦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에 대한 과태료등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⑧재심청구사유를 정함.

사회보호법

[제정 1980.12.18 법률 제3286호]

[신규제정]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개선·교화되지 않는 상습범과 조직범 그리고 현행법령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고질적인 심신장애 범죄인이 삽다히 있고, 이들은 언제 어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고 특히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각인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과하거나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행함으로써 출중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새 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 할 것인 바, 상습범·조직범·심신장애범죄자·마약류중독자·알코올중독자 등 특히 위험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의 보호와 교육·개선·치료를 위한 강호와 보호관찰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제도를 마련한 것임.

①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함.

●**상회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

●**심신상실자·마약류중독자 및 알코올중독자**

②감호사건의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찰로 함.

③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강호·치료강호 및 보호관찰의 3종으로 함.

④보호처분의 기간은 보호강호의 경우 피보호강호자의 범죄회수와 연령에 따라 10년 또는 7년으로, 치료강호의 경우 완치시까지, 보호관찰의 경우 3년으로 함.

⑤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할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강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2년마다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강호자에 대하여 매 6월마다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⑦검사는 감호청구서를 관찰법원에 제출하여 감호를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도록 함.

⑧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⑨형사사건과 감호사건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과 감호사건의 어느 일방에 대한 상소, 상소의 포기·취하,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 및 비상항고는 상방에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⑩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9호]

■ 제2조 (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25, 1996.12.12>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 제7조 (보호강호의 내용) ①보호강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보호강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강호시설에 수용하여 강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강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 ②보호강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강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강호자의 강호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강호시설로 본다.<개정 1996.12.12>
- ③보호강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9.3.25>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강호시설과 강호·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치료강호의 내용) ①치료강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강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강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 ②치료강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강호자가 강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강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개정 1996.12.1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강호시설과 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3.25]

■ 제10조 (보호관찰)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개정 1996.12.12>

1. 피보호강호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2. 치료강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강호자가 치료강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②제1항제1호 후단의 경우에는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 ④보호관찰기간 만료전이라도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강호의 집행면제결정 또는 치료강호의 종료결정이 있거나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시 보호강호 또는 치료강호(이하 두 강호를 합하여 "강호"라 한다)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신설 1996.12.12>

■ 제11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12]

■ 제23조 (집행순서 및 방법) ①보호강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강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강호와 같이 집행한다.<개정 1989.3.25, 1996.12.12>

- ②치료강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강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강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신설 1996.12.12>

- ③수개의 보호강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강호만을 집행한다.<개정 1989.3.25>

■ 제25조 (가출소·가종료등의 심사·결정) ①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강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강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개정 1989.3.25>

- ②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강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강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개정 1996.12.12>

■ 제27조 (보호강호의 집행면제등)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보호강호의 집행이 면제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치료강호가 종료된다.

- ②사회보호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강호의 집행면제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

에는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12]

■ 제29조 (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 ①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친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10일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피보호감호자가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성이 없이 임행기가 경과되어 형기가 만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기만료후 10일이내에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 제30조 (가출소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①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제11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3.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증의 일수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3·25>

■ 제32조 (사회보호위원회) ①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개정 1989·3·25>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1996·12·12>

1.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
 - 1의2.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④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검사의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6·12·12>

④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 제37조 (감호의 시효) ①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개정 1989·3·25>

1. 보호감호와 제8조제1항제1호의 치료감호는 10년
 2. 제8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는 7년
 3. 삭제 <1989·3·25>
- ②시효는 강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출소·가종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12>
- ③시효는 피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12>

■ 제42조의2 삭제 <1996·12·12>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3호]

●보호관찰법개정법률[1995·1·5 법률 제493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중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4조 생략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3호]

■ 제42조의2 (보호관찰담당자)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담당자의 직무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이 한다.<개정 1995.1.5>
[본조신설 1989.3.25]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 제41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7.12.4, 1994.1.5>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회보호위원회를 둔다.<개정 1987.12.4>
③ 군사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사회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2.4, 1994.1.5>
⑤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사회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2.4, 1994.1.5>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89.3.25 법률 제4089호]

■ 제2조 (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25>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마약류중독자 및 알코올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 제5조 (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등증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함께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등증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살해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등증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전문개정 1989.3.25]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1989.7.14(1989.3.25 법률 제4089호)]

■ 제7조 (보호감호의 내용) ①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보호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호·교화와 직업훈련 및 근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9.3.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과 감호·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경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석음·섬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3.25]

■ 제9조 (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3.25]

■ 제20조 (감호의 판결등) ① 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

② 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

⑤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5>

⑦ 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⑧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준용규정)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의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제5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3.25>

■ 제23조 (집행순서 및 방법) ①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하며, 치료감호는 형보다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개정 1989.3.25>

②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개정 1989.3.25>

■ 제23조의2 (감호내용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3.25]

■ 제25조 (가출소, 감호등의 면제심사)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개정 1989.3.25>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제28조 (치료의 위탁)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규정된 자중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25>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친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30조 (가출소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이나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또는 제28조제3항의 친족이 서약을 위반한 때에는 사회보호위원회는 결정으로 가출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중의 일수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3.25>

■ 제32조 (사회보호위원회) ①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개정 1989.3.25>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 및 그 취소와 감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재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2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위원회에 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감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3.25]

■ 제37조 (감호의 시효) ①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개정 1989.3.25>

1. 보호감호와 제8조제1항제1호의 치료감호는 10년

2. 제8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는 7년

3. 삭제 <1989·3·25>

②시효는 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출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 제42조의2 (보호관찰담당자)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담당자의 직무는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이 한다.

[본조신설 1989·3·25]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 제41조 (군법 피격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7·12·4>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회보호위원회를 둔다.<개정 1987·12·4>

③군사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사법원검찰관 또는 군사회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2·4>

⑤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사법원검찰관 또는 군사회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2·4>

사회보호법

[제정 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2.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
3. 심신장애자·마약류중독자 및 알코올중독자

■ 제3조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 제4조 (감호사건의 관찰) ①감호사건의 토지관찰은 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찰에 따른다.

②감호사건의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원 학의부의 관찰로 한다. 이 경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찰이 다른 때에는 감호사건의 관찰에 따른다.

제2장 보호처분

■ 제5조 (보호감호)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함께 5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②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함께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1989.7.14]

1989. 3. 25. 개정전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제6조 (실형 및 동종·유사죄) ①제5조에서 "실형"이라 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②제5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죄명이 같은 경우
2.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3.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4.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5.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6.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류형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 (보호감호의 내용) ①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보호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호·교화와 직업훈련 및 근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과 감호·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치료감호)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인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심신장애인로서 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마약·항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낭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선휴·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가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3호의 낭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치료감호의 내용) ①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보호관찰)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보호감호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성이 없어 잔형기를 경과한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②제1항제1호 후단의 경우에는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전이라도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의 집행면제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거나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이하 두 감호를 합하여 "감호"라 한다)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한다.

■ 제11조 (보호관찰의 내용) ①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장소에의 출입제한이나 특정물품의 사용금지 기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②피보호관찰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호관찰당당자의 지도와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처분의 절차

■ 제12조 (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심신장애등을 참작하여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감호영장) ①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감호에 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02조 내지 제207조 및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4조·제96조·제208조·제2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감호청구) ①감호의 청구를 함에는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서에는 피보호청구인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호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보호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보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체없이 감호청구서의 부분을 피보호청구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피고사건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 (감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는 때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론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론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
- 제16조 (감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여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7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 제18조 (공판절차로의 이행) ①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후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며, 치료감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공판절차이행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본다. 이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감호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제19조 (공판내용의 고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감호의 판결등) ① 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감호청구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호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보호감호 상호간 또는 치료감호 상호간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요건과 정도가 중한 감호만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형의 선고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 ⑦ 검사 또는 피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 ⑧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준용규정)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의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 및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 ## 제4장 보호처분의 집행
- 제22조 (집행지휘) ① 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 제23조 (집행순서 및 방법) ①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기간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자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하며, 치료감호는 형보다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 ②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감호기간 또는 잔여감호기간이 장기인 감호만을 집행한다.
- 제24조 (소환, 감호집행) ① 보호구금되지 아니한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이하 이 둘을 합하여

- "피감호자"라 한다)에 대한 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 ②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 ④ 감호집행장은 감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25조 (가출소, 감호등의 면제심사)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2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제26조 (형의 가석방과 보호감호) ① 행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구신하기 전에 사회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피보호감호자가 가석방기간중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성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보호감호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보호감호를 집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 (보호감호의 집행면제)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감호의 집행이 면제된다.
-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이 랑호한 때에는 결정으로 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도 종료한다.
- 제28조 (치료의 위탁)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중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자도 또한 같다.
-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친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29조 (피보호관찰자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감호자가 보호감호시설에서 가출소되거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에는 피감호자 또는 그 친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1월이내에 거주·직업·치료를 받는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피보호감호자가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성이 없이 잔형기가 경과되어 형기가 만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기만료후 1월이내에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가출소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이나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또는 제28조제3항의 친족이 서약을 위반한 때에는 사회보호위원회는 결정으로 가출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등의 일수는 보호감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감호의 집행정지) 피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레에 의한다.
- ## 제5장 사회보호위원회
- 제32조 (사회보호위원회) ①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및 그 취소와 치료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역량이 있는 자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심사) ①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이 둘을 합하여 "피보호자"라 한다) 기타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조사
2. 국·공립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 ④피보호자 기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 기타 공·사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4조 (의결 및 결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 제35조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당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당당자는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착

■ 제36조 (감호청구의 시효) ①감호청구의 시효는 감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권리하거나 권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감호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감호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제37조 (감호의 시효) ①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기간 10년의 보호감호 또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치료감호는 15년
2. 기간 7년의 보호감호는 10년

3. 제8조제1항제3호의 치료감호는 7년

②시효는 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출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종단된다.

■ 제38조 (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제39조 (감호의 실효) ①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40조 (기간의 계산) ①보호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그 보호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군법 피격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군법회의법원, 군법회의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회보호위원회를 둔다.

③군사사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법회의, 군법회의검찰관 또는 군사사회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

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보호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법회의·군법회의검찰관 또는 군사사회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제42조 (형사소송법과 행정법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별칙

■ 제43조 (별칙) ①피보호자가 감호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피보호자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타인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보호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관한 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⑧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친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제3286호, 1980.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 실형을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당당자의 직무는 보호관찰당당자가 임명될 때까지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②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을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교도소 및 국·공립병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로 대응할 수 있다.

제5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

②감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가 충분히 교화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피보호감호자의 출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감호로 보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15213호 일부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제17387호 일부개정 2003. 06. 05.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의 첨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한 형기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89-8-10]
1. 협기는 선고된 경력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하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징형된 경우에는 최초로 징형된 형기로 한다.
2.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중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결합되어 있고, 동중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척할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하되, 결합된 동중 또는 유사한 죄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날기를 형기로 한다.

제3조 (보호감호의 방법) ①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이하 "보호감호소"라 한다)에 수용·감호하고 양치를 위한 치료를 한다.
②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4조에 규정된 물질이나일교을식증등의 속력 및 중독된 구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개정 96-12-31]

제4조 (마약류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애마 기타 약물·의거나 해독처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8-10, 96-12-31, 2003. 06. 05.]

1. 마약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물질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물질

3.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물질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제5조 (보호감호의 방법) ①피보호감호자에 대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애마 기타 약물·의거나 해독처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1]

1. 보호감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주거를 이전한 때

3. 일정한 주거나 생활이 어렵게 된 때

4. 30일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지를 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7.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8. 제67조제7호의 경우에 보호관찰관은 경사에게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접촉

면제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⑤보호관찰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 내용을 신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감호자가 주거를 이전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⑥제67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자체없이 경사를 거쳐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9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공소의 체기와 동시에 감호청구를 하는 경우, 감호청구서에 기재할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본적·주거·직업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첨기한다.

②공소를 제기함에 없이 감호청구도록 하거나 공소를 청기한 후에 감호청구를 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서에 피감호당고자를 청명·연령·본적·주거·성별·체형·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한다.

③제1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이나 그 동본, 변호인선임자, 피의자 또는 보호처분대상자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 및 조건 및 그동본등을 첨부한다.

제10조 (치료감호의 청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는경우에는 청구서의 전문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동태보고등) ①보호감호소의 장은 6월마다, 치료감호소의 장은 2월마다 피보호감호자의 동태·행적·양부·치료정도 기탁 필요한 사항을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이하 이들을 합하여 "감호소"라 한다)의 장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치료감호의 종료·기종료 또는 치료의 원인이 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제5조 (치료감호의 방법) ①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수용·감호하고 양치를 위한 치료를 한다.
②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4조에 규정된 물질이나일교을식증등의 속력 및 중독된 구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개정 96-12-31]

제6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부과는 사회보호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개정 96-12-31]
②보호관찰은 사회보호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督促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③보호관찰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시설을 확인하거나 판례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제7조 (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 ①피보호관찰자는 2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호관찰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1. 기간중의 주요 활동사항
2. 기간중에 교제·회합한 우범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자·장소 및 내용
3. 기간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4. 기간중의 신행사항
5. 사회보호위원회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이상 억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내용을 보호관찰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피치료감호의 경우에 차로운 특수한 경우에 보호관찰판은 2월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친족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8조 (보호관찰의 임무) ①보호관찰판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전진한사회의 으로 복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보호관찰판은 보호관찰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개정 96-12-31]
③피보호관찰판은 보호관찰부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보호관찰판은 2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사항을 규정한 사항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친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판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96-12-31]

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하여 사회보호위원회에 신사를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출소는 그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 경과하고 특성개선의 경이 험지하여 제법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개정 96-12-31]

제11조의2(감호대용등의 공개) ①판사의 검사는 감호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②판사와 검사의 차로서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소를 체관하고자 하는 자는 감호소의 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감호소의 장은 감호소를 체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성령·체질·주소 및 청판의 특성을 명백히 한 후 청중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④감호소의 장은 외국인이 감호소를 체관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⑤감호소의 장은 청판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판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89-8-10]

제12조 (치료의 원칙)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의 원칙을 받을 수있는 친족은 법 제77조에 규정된 친족으로 한다. 다만, 사회보호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친족에게도 치료의 원칙을 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의 원칙을 받을 친족이 사회보호위원회에 체출할 서약서에는 그 친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령·연령·본적·주거·직업 및 치료를 체부하여야 한다.
하고 입원보통차등 차료를 체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와 출소통보) ①감호소의 장은 피감호자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신고를 했을 경우에 출장하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후 신고를 체출할 보호관찰판에게 출소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14조 (신고와 출소통보) ①피감호자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신고를 했을 경우에 출장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한 신고서를 감호소의 장에게 출소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부하고, 1부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1. 본체·임소전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
2. 출소후의 거주처장지
3. 거주여정지 도록예정일시
4. 기타 감호소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감호소의 장은 제1항 각호에 기재된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회보호위원회, 1부는 출소후 거주에 청자 관할보호관찰판에게 출부하고, 1부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1. 감호의 관리법원·판결연월일·종류 및 기간
2. 보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파·감호정책 및 법적사실의 요건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 법무부 훈령 제447호, 2001. 7. 3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를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감호자라 함은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라 한다)·교도소·구치소 또는 구치지소등(이하 “감호소 등”이라 한다)에 수용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노역장유치) 이 규칙을 적용받는 감호자가 그 감호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동안 급별처우는 계속하여 제22조에 의한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및 처우기관) 감호자에 대한 심사 및 처우 등의 실시는 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는 감호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5조(수용구분) ① 청송제1보호감호소(이하 “제1감호소”라 한다)에는 신입감호자와 감호자처우등급(이하 ‘처우등급’이라 한다) 다급·라급 및 마급 자를, 청송제2보호감호소(이하 “제2감호소”라 한다)에는 처우등급 가급 및 나급 자를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

인원의 조절 또는 기타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처우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우등급에 따른 수용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여자감호자는 제2감호소의 여자수용실에 격리 수용한다.

제6조(수용방법) ① 감호자는 독거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처우 또는 교육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거 수용 할 수 있다.

②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개선급·처우급, 처우등급, 연령 및 죄명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하여 수용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처우 또는 교육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범수의 산정) ① 범수는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산정한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범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범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 10년
2.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 5년

제8조(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비치) ① 독립보호감호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병과보호감호자는 형집행시 작성된 심사표를 당해 감호소등의 분류심사과(보안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호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받는 감호소등에 심사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감호자가 출소하는 때에는 당해 감호자의 심사표를 신분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장 감호자의 분류

제1절 통칙

제9조(분류심사의 구분 등) ① 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분류심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2. 근로부과·훈련방법 및 교육계획 등 처우지침에 관한 사항
3. 처우등급의 심사상 필요한 사항
4. 가출소 심사신청 요청에 필요한 사항
5. 귀휴심사상 필요한 사항
6.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석방후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9. 감호병과 수형자가 본형을 마치고 입소한 자에 대한 처우의 연계상 필요한 사항
10. 기타 수용관리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입심사) ① 신입심사는 감호자의 개인적 특성·성장과정·교육정도 및 범죄동기를 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여야 한다.

②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감호집행지휘서가 도달한 감호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예비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신입심사 대상자가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달 분류처우예비회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감호병과 수형자로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가 작성된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입분류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호자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 재심사는 개선급 또는 처우급 등의 변경심사를 말하며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

②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감호집행 개시 후 6월이내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감호집행 개시일로부터 감호를 집행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하 '감호기간'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2. 감호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④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하기로 결정한 때
3. 각종 사고의 진압 및 방지에 공로가 있을 때
4. 가출소 조건이 갖추어 졌거나 귀휴심사상 필요한 때
5. 가출소 취소 등으로 재입소한 때
6. 각종고시 합격, 기능자격취득 또는 기능대회입상 등 감호성적이 우수하여 분류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7. 기타 소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절 분류조사

제12조(분류조사 자료 및 조회) ①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감호자의 신분장부 등 본인의 처우상 작성된 자료
2. 본인이 수용되었던 감호소등·군교도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생활보호공단에서 작성한 신분장부 등 처우자료
3. 법원·검찰·보호관찰소·시청·군청·구청·경찰·학교·병원·직장·보호단체·친족 등이 작성한 자료
4. 기타 분류심사상 필요한 자료

②소장은 분류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호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감호자의 가정환경 및 보호관계 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경찰서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유·무선으로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③소장은 효과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 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호자에 대한 고충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분류조사 사항) 분류조사시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5. 보호관계
6.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7.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8.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분류검사) ①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성검사는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성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실시한다.

③적성검사는 제2항의 인성검사 대상자로서 감호기간 1년6월이상이고 35세 미만인 감호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소장은 분류검사 결과를 심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분류급

제15조(분류급의 구분 등) ①감호자의 분류급을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시설안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개선급과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처우급으로 구분한다.

②개선급은 별표1의 분류지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A급 : 교정효과 기대가능성이 높은 자
2. B급 : 교정효과 기대가능성이 보통인 자
3. C급 : 교정효과 기대가능성이 낮은 자

③처우급은 별표2의 처우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1개의 처우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V급 :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2. E급 : 학과교육이 필요한 자
3. R급 : 근로를 필요로 하는 자
4. G급 : 생활지도가 필요한 자
5. T급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자

- 6. S급 : 특별한 양호가 필요한 자
- 7. H급 : 자치적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 ④제2항의 분류지표는 심사표에 편철한다.

제4절 급별 분류처우 등

제16조(급별 분류처우) 감호자에 대하여는 개선급·처우급·처우등급·죄명·연령 및 죄질 등을 참작하여 거실지정·근로지정·교육생 또는 훈련생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처우변동 통보) 감호집행중에 상별 등 제11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신상, 기타 개별처우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은 지체없이 당해 자료를 분류심사과장(보안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처우등급

제1절 통 칙

제18조(처우등급의 구분 등) ①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단계별 처우를 위하여 감호자의 감호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우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급
2. 나급
3. 다급
4. 라급
5. 마급

- ③소장은 감호자의 번호표에 처우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우등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19조(신입 및 편입) ①신입한 독립감호자는 처우등급 마급에 편입하고 감호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상위 처우등급으로 진급시킨다.

②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자로서 본형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편입한다.

1. 누진계급 제1급 및 제2급(급외 가급포함) : 처우등급 다급에 편입

2. 누진계급 제3급(급외 나급포함) : 처우등급 라급에 편입

3. 누진계급 제4급(급외 다급포함) 및 급외 라급 : 처우등급 마급에 편입

③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증인자가 새로운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기간동안의 수형생활태도 및 행형성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편입된 자가 형 집행중 취득한 소득점수는 제22조의 소득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소득점수의 인정범위 등은 분류처우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0조(재수용된 감호자의 급별처우) ①감호집행정지 사유의 소멸로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②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가출소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당시의 처우를 적용한다. 다만, 처우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강급과 재심사하여 분류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재범으로 감호집행정지 또는 가출소가 취소되어 새로운 보호감호

선고 없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당시의 처우를 적용한다. 다만, 처우등급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 강급과 재심사하여 분류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감호집행개시전의 여죄사건으로 감호집행중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후 재수용된 감호자는 감호집행정지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감호집행중 재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하고 재수용된 감호자는 제3항과 같다.

제2절 책임점수 및 소득점수

제21조(책임점수) 감호자의 책임점수는 감호기간을 년으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의 교정성 분류급별로 정한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1. A급은 10점
2. B급은 15점
3. C급은 20점

제22조(소득점수) ①매월의 감호성적에 의한 소득점수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소행점수 : 최고 10점
2. 상훈점수 : 최고 3점

②소행점수는 준법성 · 근면성 · 책임성 · 협동성 · 정서적 안정성 및 생활습관의 정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③상훈점수는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를 산정하고 당해 처우등급에 한하여 매월 소득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진급정지 또는 강급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달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 한다.

④매월의 소득점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표의 해당란에 이를 기재한다.

제23조(소득점수의 채점기준) ①소행점수는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수 · 우 · 미 · 양 · 가로 구별하여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작업장 전체인원이 10명 미만이고 시설운영 또는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는 20퍼센트, 우는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준법성은 규칙 · 규범의 준수 및 지시명령의 이행상태를 관찰하여 채점
2. 근면성은 근로 · 교육 · 훈련 및 기타 과업에의 참여의욕 및 성실성에 따라 채점
3. 책임성은 자신의 임무와 책임의 완수 및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를 관찰하여 채점
4. 협동성은 집단활동에의 참여도 및 집단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를 관찰하여 채점
5. 정신적 안정성은 이상 행동유무 등을 관찰하여 채점
6. 생활습관은 일상생활의 용모 · 복장 · 언어 · 예절 · 청소 및 정돈 상태를 관찰하여 채점

②상훈점수는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3점, 사고수습 또는 진압에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2점, 기타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1점으로 채점한다.

제24조(감호성적채점 및 고지) ①보안, 교육, 근로 및 직업훈련담당 등과 관구책임교도관은 감호자의 평소의 행동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채점및고지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당해 감호자의 감호성적을 채점하여 다음달 3

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이 있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상훈점수 또는 분류급변경 심사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분류심사과장은 분류처우회의의 심의·의결 후 매월 20일까지 감호성적채점및고지서를 해당 관구책임자에 배부하고, 관구책임자는 보안 또는 근로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감호자에게 소득점수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이송시 감호성적채점) 감호자를 매월 15일 이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받은 기관에서, 매월 16일 이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보내는 기관에서 그 달의 감호성적을 채점한다.

제3절 진급

제26조(진급) ①감호자의 처우등급은 마급에서 가급으로 순차로 진급시킨다.
②처우등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잉여 소득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위 등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진급하기 전의 등급에서 개선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달 1일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④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감호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진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등급을 특별진급 시킬 수 있다.

- 각종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 가출소 또는 귀휴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기능대회입상, 기능사자격취득 또는 각종 고시에 합격한 때
- 책임점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제한 감호자로서 소장이 감호소 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8조(진급자의 처우) 진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진급된 등급의 처우를 실시한다. 편입, 강급 또는 강급된 자가 복귀한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절 진급정지

제29조(진급정지의 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자의 진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징벌처분을 받은 때
 - 기타 진급시킬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정지 기간동안에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진급정지의 기간) ①감호자에 대한 진급정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처분을 받은 자 : 1월
- 선정에 의한 작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 2월이내
- 금치처분을 받은 자 : 3월이내

②제1항의 진급정지 기간은 동일등급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진급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①징벌처분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진급정지처분의 기간을 감경 또는 진급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5절 강급

제32조(강급) ①처우등급 라급이상 감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등급 강급시킬 수 있다.

1. 징벌로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징벌종료 후 1년이내에 재차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처우등급 가급 또는 나급인 감호자의 소행점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이상 양 이하인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된 자에 대하여는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급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3조(강급된자의 복귀) ① 강급된 자가 특히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소득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된 자에 대하여는 복귀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되,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당해 등급의 소득점수로 합산한다.

제34조(강급처분의 유예 및 그 효력) ① 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동안의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강급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재차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강급처분을 행하고, 규율을 위반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강급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장 처우

제1절 자치활동

제35조(자치활동) ① 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의 감호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라급 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자치활동의 범위는 일과후의 인원점검·취미활동 및 거실안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기타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36조(대표자 선정) ① 감호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 및 희망사항을 표시하고 자율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는 자치활동 대상자로서 처우등급 가급 또는 나급 자중에서 감호자의 호선에 의하여 소장이 지명한다.

제37조(토론회) ① 자치활동을 허가받은 감호자에 대하여는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개최횟수 및 시기는 소장이 정한다.

제38조(연대책임) 자치활동을 허가받은 감호자의 신체·의류·거실 등에 대한 검사와 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장은 같은 거실안의 모든 감호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접견, 서신 및 전화사용

제39조(접견 및 서신수발) ①감호자의 접견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관리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②감호자의 서신발송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관리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한 수 있다.

제40조(접견장소) 소장은 처우등급 가급·나급 및 다급 자에 대하여는 접견실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하거나 접견자와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처우상 필요한 경우 처우등급 라급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접견시 교도관 불참여) 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자의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라급 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서신검열) 감호자의 서신 수·발은 교도관이 검열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전화사용) ①소장은 감호자에게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감호자에 대한 처우등급별 전화사용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우등급 가급 : 매월 10회
2. 처우등급 나급 : 매월 7회
3. 처우등급 다급 : 매월 5회
4. 처우등급 라급 : 매월 3회
5. 처우등급 마급 : 매월 3회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③소장은 감호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화사용료는 감호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3절 급 여

제44조(물품급여의 원칙) 감호자에 대한 물품급여는 처우등급에 상응하도록 한다. 다만, 식량·음료 기타 건강을 유지함에 필요한 물품은 처우등급에 의하여 구별하지 아니한다.

제45조(주·부식의 급여) 감호자에 대한 주·부식의 급여는 “재소자 주·부식 급여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주·부식의 량은 개인별 급여기준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하게 한다.

제46조(피복급여) 감호자의 피복에 관하여는 “재소자의류및침구등 제식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거실장식) 감호자의 거실에는 책상·서화·화분·거울·시계·달력 및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둘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수용관리 및 처우상 필요한 경우 처우등급에 따라 비품의 종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8조(차입물품의 사용) 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의 감호자에 대하여 감호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차입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49조(시계착용) 소장은 모든 감호자에 대하여 시계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0조(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①소장은 모든 감호자에 대하여 감호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약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진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이외의 자의 사진소지도 허가할 수 있다.

②처우등급 다급이상으로 독거수용되었거나 동급 이상의 감호자와 혼거수용된 감호자에 대하여는 감호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진비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이외의 자의 사진비지도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자기사진 송부) ①소장은 모든 감호자에 대하여 감호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기타 근친자 등에게 감호자 자신의 사진을 송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진촬영과 송부에 필요한 경비는 감호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52조(사진촬영 요령) ①사진은 교도관이 촬영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감호자가 자신의 경비로 구입한 의류(이하

“자비부담의류”라 한다)를 입게 하고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거실 기타 감호소등의 설비가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물품의 대여) 감호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사용할 식기 기타 생활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절 두 발

제54조(감호자의 두발) ①남자감호자의 두발에 관하여는 “수형자 살발제도 개선지침”에 의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분류처우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여자감호자의 두발은 위생 및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짧게 깎지 아니한다. 다만, 단정히 손질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과 교회

제55조(일반교육 등) ①감호자에 대하여는 처우등급에 따라 심신을 건전하게 단련하고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생활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일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및 시간 등은 소장이 정한다.

②감호자에 대하여는 정서순화에 적합한 교양방송을 실시한다.

제56조(학과교육)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학력이 없거나 기타 학과 지도를 필요로 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그에 적합한 내용의 학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과교육생을 선발할 때에는 심사표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57조(자기학용품사용) ①소장은 감호자에 대하여 자기학용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학용품 구입비용은 감호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58조(신문열람) ①소장은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감호자에게 매일 신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열람은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시간은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에 한한다.

③감호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제59조(도서열람실 운영) ①소장은 감호자의 교양과 정서의 함양을 위하여 도서 및 신문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도서열람실을 설치·운영한다.

②도서열람실에는 도서·잡지·신문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그 종류와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제60조(도서열람) ①소장은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감호자에게 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종류 및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제61조(라디오 청취) 소장은 모든 감호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2조(텔레비전 시청) 소장은 모든 감호자에 대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3조(체육대회 또는 오락회 개최) 감호자에 대하여는 체육대회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체육대회 또는 오락회의 개최횟수·시기 및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제64조(휴게실 등 설치) 소장은 감호자를 위하여 휴게실과 오락실을 설치하고 감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미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취미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비부담으로 한다.

제65조(사회견학) ①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의 감호자에 대하여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라급 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회견학을 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6조(사회봉사활동) ①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의 감호자에 대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라급 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7조(외부의 종교행사 참석) ①소장은 처우등급 가급 및 나급 감호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호자가 신봉하는 종파에서 실시하는 감호소 밖에서의 종교행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부의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8조(영화 등 관람) ①소장은 처우등급 가급 및 나급 감호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호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감호소등의 밖에서의 영화 등의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영화 등을 관람하는 때에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9조(교회) 감호자에 대하여는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독거실에 수용된 감호자에 대하여는 거실·교회실 또는 상담실에서 개인교회를 실시한다.

제6절 근로와 직업훈련

제70조(근로) ①소장은 교화상 필요한 경우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②근로는 감호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이하 “근로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근로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관리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71조(근로보상금 사용) ①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 중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감호자가 개인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처우등급 마급 : 근로보상금의 4분의1 이내

2. 처우등급 다급 및 라급 : 근로보상금의 3분의1 이내
3. 처우등급 가급 및 나급 : 근로보상금의 2분의1 이내
②근로보상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감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근로보상금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외부 출장근로) ①소장은 처우등급 가급 또는 나급 감호자에 대하여 감호소 밖의 작업장에 출장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다급 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외부출장 근로의 종류 및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제73조(기술지도의 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의 감호자로서 근로 또는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기술이 탁월한 자에게 기술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교도관의 업무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의 감호자로서 감호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감호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교도관의 사무처리 기타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개인근로) ①소장은 처우등급 다급 이상의 감호자로서 기술이 탁월하고 근로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감호자 자신을 위한 개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근로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76조(개인 근로용구 사용) ①소장은 개인근로가 허용된 감호자에 대하여는 개인근로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근로용구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특정한 용기를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개인근로에 필요한 재료구입경비는 감호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77조(직업훈련) ①감호자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종목 및 방법 등은 “수용자직업훈련규정”을 참작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5장 가출소 및 귀휴

제1절 가출소

제78조(동태보고) 소장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6개월마다 감호자의 동태, 처우등급, 매월의 소득점수 및 기타 감호자의 개선여부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가출소예비심사회의) ①사회보호법 제35조에 의거 검사에게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기 위하여 가출소예비심사회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출소예비심사회의는 제92조에 의한 분류처우회의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0조(삭제)

제81조(가출소예비심사회의 심사대상) ①감호소장은 감호집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출소예비심사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가출소예

비심사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처우등급 가급 및 나급으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처우등급 다급 및 라급으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처우등급 마급자에 대하여는 가출소 심사신청을 요청할 수 없다.

제82조(삭제)

제83조(가출소심사신청 요청) 감호소장은 가출소예비심사회의에서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감호자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사신청요청서
2. 보호감호결정서 및 판결문사본
3. 개인생활기록 및 기타 참고자료
4. 감호소장의견서

제84조(직권심사 자료송부) 소장은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한 가출소 심사기간 만료 3개월전에 감호자의 처우기록 등 가출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회보호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귀 휴

제85조(귀휴) 감호집행 개시후 1년이 경과하고 처우등급 다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귀휴시행규칙” 및 “귀휴심사위원회규칙”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 의결기구

제1절 분류처우예비회의

제86조(분류처우예비회의) ①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할 감호자의 분류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호소등에 분류처우 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를 둔다(청송제1감호소 및 청송 제2감호소 이외의 교도소등의 분류처우예비회의는 수형자분류처우 규칙의 분류처우예비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예비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 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제87조(예비회의의 기능) 예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류심사 및 급별사정 등에 관한 사항
2. 소행점수 및 상훈점수의 사정에 관한 사항
3. 처우등급의 편입 · 진급 · 특별진급 · 진급정지 및 강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수용 · 계호 · 근로 · 교육 또는 기타 처우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분류심사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

제88조(예비회의의 구성) ①예비회의는 근로 · 보안 · 분류심사 · 교회 · 직업훈련 · 의료 담당자 및 관구책임 교도관 등 관계 교도관중에서 분류심사과장이 지명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 한다.
②예비회의의 의장은 분류심사과장이 된다.

제89조(심의사정 및 서류회부) ①분류심사과장은 제8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분류심사과장은 예비회의에서 해당사항을 심의 · 사정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0조(의결) 예비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예비회의 결과보고) 분류심사과장은 예비회의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류처우(예비)회의 심사의결 내역서에 기재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분류처우회의

제92조(분류처우회의) ①예비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및 기타 감호자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 의결과 가출소예비심사를 위하여 감호소등에 분류처우회의를 둔다(청송제1감호소 및 청송제2감호소 이외의 교도소등의 분류처우회의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분류처우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분류처우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당해 소장이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의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제93조(분류처우회의의 구성) ①분류처우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해 소장으로 한다.
②분류처우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감호소등의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7급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제94조(심사절차 및 임원) ①분류처우회의의 의장은 분류처우회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분류처우회의의 의장은 심사상 필요한 경우 당해 감호자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5조(의결) 분류처우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6조(회의록 등 작성) ①소장은 분류처우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심사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분류처우회의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류처우(예비) 회의 심사의결 내역서에 당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분류처우협의회

제97조(분류처우협의회) 감호자 및 감호병과 수형자에 대한 연계 처우와 감호자 수용구분의 변경 및 기타 제1감호소와 제2감호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교도소에 분류처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8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의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교도관으로 한다.

1. 청송교도소장, 제1감호소장 및 제2감호소장
2. 청송교도소, 제1감호소 및 제2감호소 분류심사과장
3. 기타 청송교도소장이 지명하는 직원

②협의회의 의장은 청송교도소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감호소장 및 제2감호소장이 된다.

제99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심의절차·의결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100조(준용법령) 감호자의 분류·처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형법·동시행령,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또는 분류처우업무지침 등 교정관계법령 또는 교정관행에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 6. 5.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진급된 자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진급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 8. 6.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법무부 훈령 제424호(2000.5.29)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표 1>

<별표 2>

(4) 합리적인 분류심사로 개별처우의 효율화

다. 수 용

(1) 신입자는 독거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독거수용할 자의 순위

감호자의 독거수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 규율위반자

○ 처우상 특히 문제가 있는 자(요시찰자)

○ 행장하급자

(3) 일시수용

행형법 제55조에 의한다.

라. 접견과 서신 : 수시

마. 급 여

(1) 피 복 : 보호감호자 피복의 색채는 다갈색으로 하고 제식은 「재소자 의류 및 침구제식규정」에 의한다.

(2) 금 양 : 재소자 주·부식 급여규칙에 의한다.

바. 위생과 의료

감호자의 두발은 단삭한다. 다만, 행장상급자는 단삭을 면제할 수 있다(처우준칙 제16조).

사. 작 업

(1)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외한 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부과한다(법 제7조 제1항).

(2) 근로에 당하는 감호자에게는 1일 1,500원 범위에서 행장 및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한다.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금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250 교육생

(3) 근로등급 및 보상금 계산

○ 근로보상금 일액

○ 근로등급사정

· 중노동(목공, 영농 등) 7급~1급

· 경노동(청소부, 경리부 등) 9급~1급

· 교육생

第2章 保安1課 業務

- 신입자 : 10등급 일액지급
- 노동중 편입자 : 편입시 등급일액의 1/2 차급

작업성적	수	우	미	양
인원배분	10%	20%	40%	20%

○ 작업성적별 배분

작업성적별 인원배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작업성적	수	우	미	양
승급기간	8월	10월	12월	14월

○ 작업성적 배분률표

○ 승급 및 강급

- 승급소요기간

행장불량자의 작업등급 승급정지

행장승급이 정지되거나 강급된 기간은 작업등급 승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특별승급

기술이 탁월하고 행장이 우량한 자는 상당한 등급에
시킬 수 있다.

- 강급 및 체급

근로성적 불량자는 근로를 취소하거나 근로등급을 강급
할 수 있다.

등급의 강급은 1등급으로 하고 체급은 6월 이내로 한다.

○ 부칙 해당자의 등급사정

법부칙 제5조에 의한 감호자의 최초등급은 경노동취업자는
등급에 중노동취업자는 3등급에 편입한다.

아. 영치(노동보상금의 관리)

- (1) 감호자 근로보상금은 매월 말 1개월 분을 계산하여 영치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본인의 구좌에 영치하여야 한다.
- (2) 영치된 보상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 (3) 노동보상금의 자기사용은 처우지침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치료감호소당직근무지침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당직근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치료감호소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무과, 감호과, 의료부 등 모든 치료감호소 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숙직 근무를 동시에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근무 등) ① 소장은 숙직근무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은 초번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말번은 익일 02:00부터 06:00 까지 분담해서 근무하며 이외의 시간은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소장은 기관운영 및 사고예방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휴식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등) ①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명령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명령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의 일부 면제) ① 신규임용된 자로서 2주일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② 출장, 교육, 공가, 연가 등이 1주일 이상인 자는 면제한다.

③ 병가 5일 이상인 자는 면제한다.

④ 본인 결혼 및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명령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면제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관리당직장은 당직 명령권자에게 기타 당직은 주무과장과 관리당직장에게 각각 당직신고를 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일 경우에는 숙직 또는 일직근무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일·숙직 구분없는 부서는 교대자 상호간에 인계 인수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